

피해등급의 기준(제45조의5 관련)

피해등급	장애내용	전신 장애율
사망	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	
1급	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초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	80 % 이상
2급	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	60 % 이상
3급	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	40 % 이상
4급	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	20 % 이상
등급 외	1.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2.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	20 % 미만 또는 판정불가

비고

1. 피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.
2. 피해등급 산정을 위한 전신 장애율의 산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